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1호	500	750	1,000
나.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2호	500	750	1,000
다. 삭제 <2024. 8. 6.>				
라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4호	100	250	500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	법 제60조제2항	50	100	150

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			
바.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5호	100	250	500
사. 법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0조제1항제6호	100	250	500
아. 삭제 <2024. 8. 6.>				